

##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쟁점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Key Issue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the Countermeasures against Them

임 광 현 (원광대학교 행정언론학부 교수 - 주저자)

#### *Abstract*

**Kwang-Hyun Im**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key issue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th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issues. For this purpose, first the concept, background and history abou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as reviewed, and nex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 laws and regulations as well until before then were researched through the second materials like as the books and statistical data issued the authorities and companies concerned. For this studies some cases were also examined which have tried to how to know exactly about the real meaning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thoroughly make protection measures. Some consequences were found. Firstly there are some issues whic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made in March 30, 2011 and put into operation on September 30, 2011 has been comparing to lthe aws and regulations that were valid until before then. Secondly in order to solve these issues or problems some countermeasures were presented like as: 1) the laws and regulations would has the sustainable consistency, 2) the efforts would be developed which could meet them, 3) the regulation of punishment would be made up for the issues or problems whic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itself has.

**주제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 스마트사회, 사회관계망서비스, 전자정부

**Keyword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Privacy, Smart Society, SNS, e\_Government

## I. 들어가는 말

미국 NSA(national security agency, 국토안보국)에 의한 OECD 30개국 정상의 전화도·감청(한겨레신문, 2013. 10. 28일자 17면), 그리고 각국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국민들에 대한 공·사부문에서의 한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 접근은 IT에 기반을 둔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관계망서비스)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직·간접으로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듯 오늘 날 정보사회에서는 프라이버시의 침해 가능성이 산업사회에 비해 보다 많아지고 있다. 정보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정부가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이러한 자료들을 한곳에 모아서 비교하고 분석하여 모든 생활 형태를 손바닥 들여보듯이 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수집·분석활동은 아무리 좋은 동기에서 시작한다 할지라도 개인의 행동을 관련기관에서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닐 수 없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가상공간에서 신원확인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프라이버시의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오용과 남용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세계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등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는 인터넷 강대국으로서 짧은 기간 동안에 정보화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확산을 이루었고 우리에게 많은 편리한 혜택을 가져다주어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sup>1)</sup> 그러나 이러한 편리성이라는 측면에서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많은 역기능적 현상이 나타났고 사회적 문제와 비용을 낳고 있다. 역기능적 현상의 예로 해킹, 바이러스와 같은 사이버 범죄, 인터넷 중독, 그리고 정보화 격차 등을 들 수 있다(임광현, 2010: 17).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정보화의 역기능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해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개인정보침해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개인정보에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수많은 기업들과 개인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어떤 의미에서 개인의 순수한 사생활 영역에 속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정보화 기술 발전 등에 따라 국가기관들 뿐만 아니라 대규모 기업,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심지어는 개인들에 의해서 까지 그 수집·가공·이용 및 제3자에 제공 등이 대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르는 국가적, 사회적 문제 및 그 관리에 대한 이슈 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

1)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백서(요약본), 2012. 2013년 1월에 발표된 UN 전자정부 발전지수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다. [http://www2.unpan.org/egovkb/global\\_reports/..](http://www2.unpan.org/egovkb/global_reports/) UN. (2012). United Nations E\_Government Survey 2012.

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등은 국가적인 감독과 법률의 규제가 필요한 영역이 되었으며, 점점 더 개인정보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인식의 문제는 급격한 IT 인프라의 발전으로 정보 검색 및 공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위험성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자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우려와 접근 가능성 증가로 인해 주민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의 노출<sup>2)</sup>로 사생활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등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7).

본 연구에서는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법 시행에 따른 주요 쟁점에 대한 고찰해 보고 이들 쟁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사람들의 인식제고와 개인정보 노출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 대책과 후속조치들에 대한 제도정비를 위한 대책과 시사점을 제안하기 위함이다(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7: 1).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본 글을 진행하는데 사용되는 각종 용어 등에 관한 개념정의 및 현황 등에 대한 연구대상 및 범위는 기존 학계와 관련기관에서 연구된 결과물인 이차적인 자료로서 주로 문헌 및 사례탐색을 대상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관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홈페이지를 분석함으로써 연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법규를 탐색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래 이에 대한 관련 당사자들의 양적 질적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함으로써 대책을 기술하는데 참고하였다.

## II. 이론적 고찰

### 1. 개인정보보호 의의 및 등장배경

#### 1) 개인정보보호 의의와 필요성

개인정보보호의 근본적인 의미는 이용자의 '개인정보<sup>3)</sup> 자기결정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2)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2년말 통계자료에 의하면 개인정보침해 사건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전체 19.8%를 나타내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년 개인정보보호 주간동향 제7호).

3)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지칭한다. 이 정의에서 사용된 개인정보의 범주는 ①법인·단체·사업체 그리고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은 개인정보, ② 사망자를 포함하지 않고 생존해 있는 개인의 정보, ③ (생년월일)등 해당정보만으로는 당해개인을 식별할 수 없을지라도 여타정보(특정지역)와 혼합했을 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④ 컴퓨터로 처리되는 정보로 분류된다. 오늘날 정보사회에서는 인간의 일상적인 삶이란 사실 개인정보의 지속적 생산 및 이용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은 정보주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100~200개 정도의 정보를 소

것이다. 여기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자신의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지를 정보 제공 이전에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정정할 수 있으며 더 이상의 개인정보 이용을 원치 않는 경우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파기를 요청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취급하고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항상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것이고, 사업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고객정보를 수집·이용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명심하여야 한다(행정안전부, 2009: 15).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먼저, 개인정보는 전자상거래, 금융거래 등 기업 활동<sup>4)</sup>에도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가치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활동이 사회 전 영역에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 규모면에서 볼 때 대규모로 수집 및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출이나 오·남용으로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신적, 경제적 피해 역시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의한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구제할 수 있도록 정보 주체의 존엄과 자유로운 인격의 형성, 발전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절차 및 사전 예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행정안전부, 2012).

## 2) 개인정보보호논의 등장배경

### (1) 알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의 생성과 발전

국민의 알 권리는 국민 자치의 존재보장, 즉 표현의 자유를 보다 가치있고 실효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권리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주로 국가에 대한 정보에 대한 청구권적인 면이 강조되어온 이 권리가 개인 사생활의 영역에까지 그 진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서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권리가 상충하게 된다. 개인 사생활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프라이버시의 권리이기 때문에 알권리의 절대적 주장은 그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시대나 지역, 개인의 사정에 따라 그 개념은 일정하지 않다.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의 경우 프라이버시권은 국가권력에 대하여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성

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기업이 점점 증가하는 보안사고로부터 천문학적인 소송과 막대한 이미지 손실, 브랜드 가치의 하락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함. 이러한 보안 위협에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 이에 DRM, DLP, 매체제어, 콘텐츠 보안 솔루션 등이 많은 관심 속에서 기업 데이터 보안의 기본으로 자리 매김 함.(김태형 기자 글 중 발췌: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23622&kind=1>)

립되었기는 하나, 이는 주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하여 발달한 것이며, 인신에 대한 침해의 구제는 인신에 대한 직접적 침해의 구제, 즉 육체적 이익의 보호에 그쳤다. 그러나 문화적 수준의 발달은 인간의 정신상태의 무형적 침해에 대한 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1890년대 미국의 Warren과 Brandeis가 'The Right to Privacy'라는 논문에서 프라이버시권을 '혼자 가만히 놔두어질 권리(the right to be let along)'라고 정의하였다.<sup>5)</sup> 즉, 프라이버시권은 자신의 정보를 부당히 공개당하지 않을 인간의 권리 또는 개인이 자기 자신과 소유재산에 대하여 공적으로 엄격한 조사를 받지 아니할 권리라고 정의되었다. 그러나 이 권리의 한계점은 공공 또는 일반의 이익이 되는 사항의 공개를 막지 않으며 당해 개인에 의한 또는 그의 동의에 따른 당해 사실의 공개에 의해 소멸되고, 공개된 것의 진실성은 항변되지 않으며 공개하는 자가 악의가 없을 때에는 항변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후 프라이버시권은 판례와 입법에 의하여 실정법상의 권리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으며(임광현, 2003: 24), 1세대 프라이버시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고전적 개념 입장의 '혼자 있을 권리, 2세대 프라이버시권의 새로운 개념인 '자기정보통제권,' 그리고 3세대 프라이버시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보다 고양된 '반감시권'으로 변화되어 왔다.

## (2)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증대

1980년대 이후 정보시스템 및 정보처리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네트워크화의 진전, 그리고 1990년대의 인터넷망의 급격한 확충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한층 가중시켜 오고 있다. 2000년 이후 획기적으로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은 정보의 수집과 저장, 유통이 용이해지고 누구나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교육, 쇼핑, 행정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오늘날에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사회의 도래가 시작되었다(임광현, 2010: 4)

그러나 이와 같은 급격한 정보화는 무분별한 광고성 정보전송, 사이버 범죄, 정보 격차 문제 등 새로운 정보화 역기능을 초래하게 되었다(임광현, 2010: 20). 특히,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유통이 간편해짐에 따라 집적된 개인정보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못해,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기도 하고 브로커에 의해 다량의 개인정보가 거래되기도 하는 등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비대면의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매개로 서로

5) 미국의 법관이었던 쿨리(T.M.Cooly)는 1888년에 프라이버시를 인간의 신체에 대한 권리는 완전한 불가침의 권리, 즉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be alone)라고 처음으로 명명하였고 워렌과 브랜다이스(S. D. Warren & L. D. Brandeis)는 문명이 발달함으로써 인간의 생활이 매우 복잡하게 되었기 때문에 세계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 "혼자 있을 수 있는 개인의 일반적인 권리(the more general right of individual to be alone)"라고 규정하고 있다.

를 확인한 후 사회·경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므로 개인정보의 도용 및 프라이버시 침해 시 그 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에게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주게 되며 정보사회 자체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 <표 1>은 2013년 4월 셋째 주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주제별 기사 건수와 이슈화된 주제 건수를 나타낸 표이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이슈화된 주제를 보면 피싱이 제일 많은 건수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유출, 빅데이터, 주민번호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화된 주제별 건수

주제	빅 데이터	클라우드	암호화	동의만 능주의	피싱	잊혀질 권리	주민 번호	CCTV	모바일 메신저	대체 수단	기타 (유출)
건수	3	1	1	0	13	2	1	4	0	1	12
증감	+1	-	-2	-	-3	+2	-1	-2	-	-	+2
연간 누적	19	7	11	3	110	13	16	19	8	7	81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10. 31.

한편 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란 유·무형의 기업 자산 보호와 직결되어 있다. 실제로 개인 정보는 마케팅을 위한 기업의 소중한 자산이며,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경우에는 고객의 신뢰성 저하로 인해 기업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유출 피해자들의 대규모 소송이 제기되고 실제로 대부분의 소송에서 피해배상 판결이 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는 기업의 경영 수익과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업 간 경쟁 심화에 따라 영업 이익 극대화 및 업무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개인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 취급의 위탁 행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박희영, 2012), 이로 인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취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또한 확대되어,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관한 규정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행정안전부, 2009: 6-7).

(3) 한국헌법상의 사적(개인적)자유

한국의 헌법전문에서 보장하고 있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은 사생활이 공개되지 아니하고 비밀이 유지될 때 가능하다. 그러한 사생활의 비밀(헌법 제17조)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말하므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프라이버시권의 소극적인 침해배제를 의미한다. 또한 같은 조문의 사생활의 자유는 프라이버시권의 보호객체인 사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자기결정권으로서 이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의 핵심인 일방적 행동자유권의 사생활 영역의

내용을 이룬다.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사생활의 부당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동시에 자기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기정보에 대한 접근이용권 및 자기정보 정정요구권을 요소로 한다. 즉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사생활에 대한 소극적 침해배제청구권인 동시에 적극적 자기정보통제권을 포함하는 주관적 공권으로서 이 양자적 성격이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임광현, 2003: 626).

## 2. 개인정보침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 1) 개인정보침해 의의와 침해 유형

#### (1) 개인정보침해 의의

개인정보 침해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 및 그 정당한 관리주체의 동의 또는 허락 없이 수집, 가공, 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개인 또는 법인 등이 불법한 방법과 수단 등을 이용하여 정보주체의 정보 또는 정보 관리자가 보유 중인 정보 등을 허락 없이 빼가는 행위(해킹) 등이 이에 해당 된다. 여기서 정당한 관리주체라 할지라도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 이외에 수집, 가공, 이용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또한 개인정보침해에 해당한다. 바로 이점 때문에 기업 등의 개인정보가 그 관리에 있어 문제가 되고 중요해지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한 통신회사가 돈을 주고 제3자에게 고객정보를 넘겨주는 것 뿐 만 아니라 관리 부주의로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망법' 및 개별 법령 등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제한, 개인정보의 이용제한,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등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인 동의 절차, 제공절차, 확인 절차 등 그 관리에 관한 규제 조항들이 있다. 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등'의 규제 조항도 있다. 법적으로는 이런 조항에 대한 위반이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가 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주체는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자신의 법익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그 침해자에게 그 침해의 중단 및 제거, 예방 등을 주장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그 정보의 관리주체 등에게도 정보의 수정 변경 청구, 삭제 청구, 정보 권리의 보호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보주체의 정당한 권리주장 등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응, 보호 조치의 미흡 등도 침해가 될 수 있다.<sup>6)</sup>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관련 조항 참조.

(2) 개인정보침해 유형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대표적인 침해 유형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17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 처벌 관련 법조항은 다음 <표 2>와 같다(강달천, 김민섭, 김현철, 2005: 42). 또한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제, 체계는 개인정보 유출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sup>7)</sup>

<표 2> 개인정보 침해유형 및 법률 근거<sup>8)</sup>

침해 유형	법률 근거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정보보호법 제22조 제1항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 또는 명시 의무 불이행	정보보호법 제22조 제2항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정보보호법 제23조
고지·명시한 범위를 초과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2차 제공	정보보호법 제24조 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훼손·침해 또는 누설	정보보호법 제28조의2
개인정보처리 위탁 시 고지의무 불이행	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의무 불이행	정보보호법 제26조 제1항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 지정	정보보호법 제27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정보보호법 제28조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정보보호법 제29조
동의철회·열람 또는 정정요구 등 불응	정보보호법제30조 제1항 및 제2항
개인정보 오류정정요구 접수 후 미 정정 정보이용	정보보호법제30조 제5항
동의철회·열람 또는 정정을 수집방법보다 쉽게 해야 할 조치 미 이행	정보보호법제30조 제6항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정보보호법제31조 제1항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정보보호법제50조 내지 제50조의5
타인정보의 훼손·침해·도용	정보보호법제49조
기타	

7) 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반법이 없어 법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개별법간 처리기준 등이 상이 하여 국민의 혼란 초래. ② 공공기관(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사업자(정보통신망법) 등 개별법 체계로 법원 등 헌법기관, 오프라인 사업자, 비영리기관 등은 법적용 배제: '09년 개인정보침해 사고 신고건수 32,422건 중 법적용 제외사업자가 68.1%(22,067건).

8)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privacy.kisa.or.kr/privacy/jsp/privacy\\_5010.jsp](http://privacy.kisa.or.kr/privacy/jsp/privacy_5010.jsp)



## 2)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 (1)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제정<sup>9)</sup>의 필요성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게 된 배경은 각급 기관,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sup>10)</sup>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는 대형화, 지능화, 다양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고, 개인정보 유출은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함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11)</sup>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산재해 있는 법규 체계는 개인정보 유출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sup>12)</sup> 국내외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제정의 필요성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① 일관성 있는 법제의 제정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제가 분산되어 일관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영역의 기본적 법령에 비밀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어 규제하거나, 개별적인 입법만이 이루어지고 있어 입법적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분야에서는 적용할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담당부처별로 상이하거나 업무가 중첩되어 있어 사회의 제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명승환, 2012, 15-23).

#### ② 개별법상 문제점 보완

우리나라 현행 법률의 개인정보보호제도의 특징은 영역별 개별법에서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사안에 따라 추상적이고 구체성을 결여한 채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행위준칙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일반법의 부재가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 
- 9)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김상광;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23585&kind=1>.
- 10) ① GS칼텍스 1,100만건 개인정보 유출 등 해킹, 내부직원 유출, 담당자 부주의 등으로 '07-'10년간 8,000만건 침해사고 발생(한국인터넷진흥원). ② 그 밖에 인터넷쇼핑몰 등 2,000만 건 유출('10.3), 옥션 1,084만 건 해킹('08.2), SK콜센터 연예인 등 2만 건 유출('09.9), 청계천 현책방 15만 건 판매('10.1), 병무청 홈페이지 3만 건 유출('08.7), 대학시도교육청 61,000건 유출('07-'09)
- 11) ① '05-'07년 개인정보침해 피해규모는 총 10조7000억 원으로 추정(한국인터넷진흥원). ② (국가) 전자정부의 신뢰성 하락 등에 따른 IT산업의 수출예리, 국가브랜드 하락 등을 야기. ③ (기업) 기업의 이미지 실추, 소비자단체의 불매운동 및 다수 피해자에 대한 집단적 손해배상 시 기업경영에 큰 타격: 옥션, GS칼텍스 등 60여건 소송제기, 19만4천명 소송참가, 소송청구액 2,100억 원. ④ (국민)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명의도용, 보이스피싱에 의한 금전적 손해 및 유괴 등 각종 범죄에 노출 우려.
- 12) 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반법이 없어 법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개별법간 처리기준 등이 상이하여 국민의 혼란 초래. ② 공공기관(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사업자(정보통신망법) 등 개별법 체계로 법원 등 헌법기관, 오프라인 사업자, 비영리기관 등은 법적용 배제: '09년 개인정보침해 사고 신고건수 32,422건 중 법적용 제외사업자가 68.1%(22,067건).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는 일찍부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비의 시급함을 지적하고 논의하여 오고 있으며, 정부도 이러한 사회 각층의 성숙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인지하여 개인정보기본법의 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sup>13)</sup>

## (2) 관련 법규

### ① 해외 주요국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프라이버시는 최근에 와서 보다 구체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1970년대 들어 각국에서는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구체적인 대책들을 모색하였는데 스웨덴에서 1973년에 세계 최초로 ‘데이터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각국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된 입법을 경쟁적으로 추진하였다. 미국은 1974년에 ‘프라이버시법’을 제정하였으며, 프랑스는 1978년에 ‘정보처리 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일본은 1980년의 OECD 권고를 받아들여 1988년에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 처리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각국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들의 제정은 초기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제반 규정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으며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하여 주었다.

### ② 한국

####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의 관련법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정보통신, 공공행정, 금융, 신용, 의료, 교육 등 개별분야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적용되는 법률이 있어 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전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련법 현황을 보면, 공공 부문에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sup>14)</sup>을 통해 규정하고 있고, 민간 부문은 ‘정보통신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sup>15)</sup> ‘의료법,’<sup>16)</sup> ‘신용정보보호법’<sup>17)</sup> 등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관련 법규 중에 민간 영역의 규제범위가 가장 넓은 법률은 정보통신망법이었다(신영진, 2007). 이 외에도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규칙,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추진에 관한

13) 그 중하나를 예시하면 2003년 4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하여 동 기관을 주축으로 관련법 제정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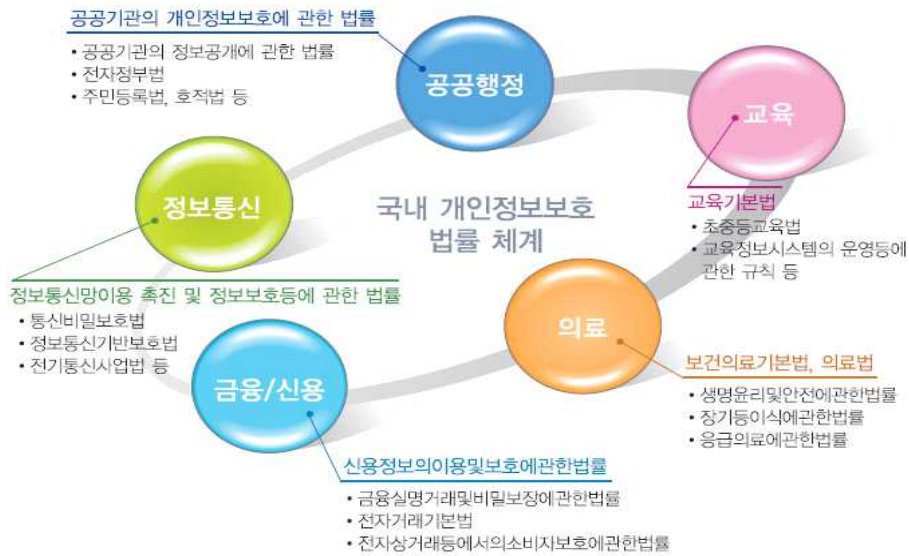
14) 법률 제10465호, 시행: 2011.09.30, 타법폐지: 2011.03.29.

15) 이 법체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7127호, 제정: 2004.1.29, 시행: 2004.07.29), 전자정부법(법률 제10012호, 제정: 2010.2.4, 시행: 2010.5.4), 주민등록법(법률 제8422호, 제정, 시행: 2007.5.11), 호적법(법률 제8435호, 제정: 2007.5.17, 시행: 2008. 3.1. 이 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폐지되었음.)

16) 법률 제8366호, 공포·시행: 2007.4.11.

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617호, 제정: 2009.4.1, 시행: 2009.10.1).

법률 등이 있다(〈그림 1 참조〉). 참고로 우리나라와 관련 당사국간 호혜법 체계로는 OECD 가이드라인과 미국 Privacy Act 등이 있다.



〈그림 1〉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률 체계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sup>18)</sup>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제가 분산되어 일관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미비라는 법체계상 한계가 있었다. 각 영역의 기본적인 법령에 비밀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어 규제하거나 개별적인 입법만이 이루어지고 있어 입법적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분야에서는 적용할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2〉 참조).

18) 법제처: <http://www.moleg.go.kr>. (법률 제10465호, 2011년 3월 39일 공포, 2011년 9월 30일 시행) 행정안전부. 2010. 3. 11. 보도자료, 18면.



〈그림 2〉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 ③ 법 제정 의의 및 주요 내용

#### 가. 법 제정 의의

2011년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개인정보보호란 ‘개인의 신상, 이력, 재산 등 중요한 정보 도용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와 관련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여 각종 유출사고들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지운다. 지난 2003년 처음 입법논의가 시작된 이래 8년의 산고 끝에 2011년에 3월에 재정되었고 동년 동월 9월부터 시행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사업자가 업무상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수집·이용할 경우에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가능하며, 회원탈퇴 등 처리목적이 달성된 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해야만 한다.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 동창회, 부동산 중개소, 쇼핑센터, 택배사, 여행사, 휴대폰 대리점, 비디오 대리점, 변리사사무소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350만 사업자가 적용대상인 것이다. 이는 2011년 9월30일부터는 국내의 거의 모든 기업과 단체가 새로운 사업 환경에 처하게 됨을 의미한다.

특히 종래 정보보호법의 대상에 머물렀던 개인과 단체도 동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로 인식되어 법적의무와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동호회 회원명부를 수집·관리하는 개인 경우처럼 비록 영리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리하는 개인정보(수기문서포함)가 유출되어 피해를 야기하게 되면 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동법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및 여권번호 등의 개인인식식별정보에 대한 처리를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 타 법률에 의해 처리가 허용된 경우 및 공공기관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해서는 처리가 가능하다.

이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기업은 향후 기업 활동에 있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폐기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정책과 절차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개인정보최고책임자 아래 독립된 정보관리부서를 두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업의 명확한 방침이 기업조작과 활동 전반에 전파되어 적절한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민간사업자·공공기관 포함)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안우현외, 2012: 39). 개인정보 유출시 통지·신고제도, 집단분쟁조정제도, 권리침해의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의 도입 등으로 인해 법적 의무 준수를 게을리 한 기업은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반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감경 받을 수 있다.

국민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신청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잘못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 없이 118)에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수에 게 비슷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 단체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 나. 주요 내용

##### (적용범위)

‘개인정보 보호법’은 적용대상을 공공과 민간영역의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제2조). 또한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외에 수기(手記) 문서까지 개인정보의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법률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가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재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기준)

동법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등을 얻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파기에 이르는 각 단계별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제15조~제22조), 실질적인 개인 정보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유 식별정보 처리 제한)

동법은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제24조). 주민등록번호 등 법령에 의하여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고유 식별 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하고, 별도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 의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했다.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등 일정한 경우, 주민등록 번호 이외의 방법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동법 제3조에서 규정한 위험성 있는 개인정보의 활용 최소화 원칙이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도입)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민간영역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의 구축확대 등이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자율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기관은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우려가 큰 일정한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영향평가 수행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제33조).

(정보 유출사실의 통지-신고제도)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때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4조). 이러한 규정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2차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권리주장)

개인정보의 열람청구권, 정정삭제 청구권, 처리정지 요구권 등의 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35조~제39조). 이는 그간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제기되어 왔던 자기정보통제권 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일반법에 명문화하여 구체적인 권리를 보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신장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 도입)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 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수락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며, 또한 개인정보 피해가 대부분 대량소액 사건인 점을 고려하여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였다(제40조~제50조). 이와 더불어, 법 준수의 경각심과 사회적 비용을 감축시키기 위해 단체소송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다만, 단체소송 전에 반드시 집단분쟁조정제도를 거치도록 하고 단체소송의 대상을 권리침해행위의 중단·정지 청구소송으로 제한하고 있다(제51조~제57조).

#### ④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및 규칙을 제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안전성 조치, 영향평가 기관 지정 등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책임자 지정요건, 유출신고의 범위, 집단분쟁조정 절차 등을 준비하였으며 계속적인 사례를 통해 보완해 오고 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국회추천·대법원 지명·대통령 임명 각각 5인씩), 직급 협의 및 위원회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를 완료하였다. 셋째, 개인정보 표준지침 등 제도시행을 위한 고시 및 지침을 제정하여 '유출통지제', '영향평가제' 등 신규제도 시행을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고유식별정보 처리지침, CCTV 운영지침, 개인정보파일관리 지침 등 19여종의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넷째, 매년 3개년 마다 범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별로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각급기관의 역할 및 실행방안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기본계획 내용에는 제도·법령 개선, 침해방지 대책, 교육·홍보 및 자율규제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법제정으로 달라지는 점을 국민과 사업자 교육을 통해 홍보하기 위해 법 해설서를 제작하여 보급하였고, 공공기관·사업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입체적으로 홍보를 추진하였다. 여섯째로, 법제정 후속조치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연구회'를 발족시켰으며, 법학, 행정학, 정보보호, IT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립하여 정책포럼 개최, 분야별 지침 지원 및 기초통계 조사·연구 등을 지원하여 오고 있다.

### Ⅲ.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주요 쟁점분석 및 대책

#### 1.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쟁점사항들

##### 1) 개요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여 올해로 시행 2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법 시행으로 인하여 제조업, 서비스업, 소상공인 등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수범대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과 각종 조치사항들이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상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나 민감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도 별도의 처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이 달성되면 해당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하며, 다른 법령의

근거가 있거나 보관기간을 명확히 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보관이 가능하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과 함께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법적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의무강화에 따라 사업자들과 공공기관들 모두 공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송은지, 2012: 12). 그러나 아직 법 시행 후 2년여가 경과한 시점이어서 새로 제정·시행된 법률에 대한 인식 부족이 일부 존재하고, 또한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들은 인력과 예산의 미비 등으로 인해서 어떤 조치사항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손을 놓고 있는 경우도 많이 보이고 있다.

## 2) 관련 법 조항 및 사례분석을 통해 본 쟁점사항들

### (1) 관련법 조항

#### ① 규율대상

규율대상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개별적으로 기존에 적용이 되어 왔던 대상들에 있어 상호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기존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에서는 공공기관, 정보통신사업자,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자 등 분야별 개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던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적용대상을 공공 및 민간 통합 규율로 법적용대상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즉, 이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에는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오프라인 사업자, 의료기관, 협회 및 동창회 등 비영리 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 ② 보호범위, 수집·이용 및 제공기준

개인정보보호범위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기존에 존재해 왔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규들에서는 공공기관은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였으나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동사무소 민원신청서류 등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수집·이용 및 제공기준에서 상호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공공, 민간을 망라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 ③ 고유식별정보처리 제한

기존에 존재해 왔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들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 정보의 민간사용을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



지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존재해 왔던 법률에서는 인터넷상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방법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한정하여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방법 제공 의무화 대상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공공기관, 일부민간분야 개인정보처리자까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 정보 처리 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 확보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

기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한하여 규율하도록 하고 있어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을 거쳐 설치하는 등 녹음기능, 임의조작 기능이 가능하였었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공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규제를 민간까지 확대하여 공개된 장소인 백화점, 아파트 등 건물주차장, 상점 내외부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법령, 범죄예방·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등을 위해서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규율대상을 기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서 네트워크 카메라도 포함시켰으며 공중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사생활침해 우려가 큰 장소는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 ⑤ 텔레마케팅 등 규제 및 유출 통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존 법률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한하여 규제하여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취급을 위탁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를 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마케팅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와 묶어서 동의를 받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보주체가 알기 쉽도록 고지하고 동의를 받을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마케팅 업무를 위탁 시, 정보주체에게 위탁업무 내용 및 수탁자를 고지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기존 법에서는 유출시 통지는 선택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사실의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 ⑥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및 영향평가

기존 법에서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 보유시 안전행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 보유시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존 법들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은 사전협의파일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은 등록사항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새로 제정된 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대규모로 개인정보파일을 구축할 경우 개인정보 침해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사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⑦ 위원회 설치

기존 법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 부문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하여 공공,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승격시켰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 법에서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민간분야분쟁을 조정하였으나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공공, 민간 분쟁조정을 시행토록 하고 있다.

#### (2) 사례분석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민원 현황을 보면, 2012년 한 해 동안 개인정보 침해신고 2,058건, 법령 및 기술질의 상담 164,743건 등 전체 개인정보 민원은 무려 166,801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2011년의 122,215건 대비 약 36%나 증가한 수치이다. 접수 유형을 살펴보면, ‘주민등록번호 등의 타인정보 훼손·침해·도용’ 유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외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 유형,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유형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림 3〉은 대다수 개인의 정보가 수집되어 있는 기업 포털에 접속하여 기업정책 전반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전체를 해킹하는 신종 프로세스를 요약한 것이다. 최근의 해킹사고는 ‘지능형 지속위협(APT, Advanced Persistent Threat)’이라고 불리는 표적 공격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APT란 특정 기업이나 조직을 노리는 표적 공격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특정 기업이나 조직의 네트워크에 침투해 활동 거점을 마련한 뒤 기밀 정보를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빼돌리는 보다 은밀한 형태의 범죄로 진화하여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개인 해커에 의한 공격이 아니라 정부 또는 특정 회사의 중요 정보 획득, 정치적 목적, 사이버 테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 그룹에 의해 사이트, 기업, 개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해킹 공격이 이루어진다. 또한 APT 형식의 컴퓨터범죄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어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이르기까지 아주 느린 속도로 공격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료: 최원혁, 2011: 3.

〈그림 3〉 APT 공격 프로세스

SNS등을 통해 메일을 수집하고 피싱 메일 등을 통해서 악성코드가 첨부된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해킹 대상인지를 파악하게 된다. 〈그림 3〉은 APT 공격 프로세스를 도식화한 것이다(국가기록원, 2011: 17). APT 공격의 대표적 실제 사례 중 가장 최근의 예는 농협 전산망 해킹사건으로 볼 수 있다. 2010년 9월 모 웹 하드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된 악성코드에 의해 농협 시스템 관리자로 있던 업체 관계자의 노트북이 감염되었다. 이후 이 악성코드에 감염된 노트북 중 한 대가 농협시스템 관리자의 노트북인 것을 알고 모니터링해서 공격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에서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에서 사업자 및 공공기관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 침해사례 4가지를 살펴보고 주요 쟁점사항을 정리해 본다.

①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사례

안전성 확보조치(법 제29조) 미비로 인한 침해사례는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침해 유형 중의 하나이고, 또 한편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의가 많은 사례이기도 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보안프로그램, 물리적 조치 등 6가지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접근통제 미비로 인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원래는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가 홈페이지나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서 노출된다면, 또다시 명의도용이나 피싱 등과 같은 대량의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사업자나 공공기관으로서는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의 노출원인은 크게 4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 관리자 부주의로 인한 정보 게재, 두 번째 고객이나 민원인의 부주의로 인한 스스로의 정보 게재, 세 번째 홈페이지나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설계·운영 오류로 인한 노출, 네 번째로 앞서 본 세 가지 원인으로 노출된 개인정보가 검색사이트를 통해 다시 검색되어서 노출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기관의 업무 특성에 맞는 노출 방지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홈페이지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보안취약점으로 인한 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홈페이지의 접근권한 등도 수시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만에 하나 개인정보의 노출이 발생되더라도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하고 있는 암호화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며, 게시판 등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게재되지 않도록 필터링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조치사항은 안전행정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에 게재되어 있다(보통신산업진흥원, 2013).

#### ② 암호화 조치(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미비 사례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해야 하는데(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7조제6항 참조) 이는 국내외의 전문기관에서 권고하는 알고리즘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칭키 암호의 경우 AES-128/192/256나 SEED 등, 공개키 암호의 경우 KCDSA(전자서명용)이나 RSA 등, 일방향(Hash) 암호의 경우 SHA-224/256/384/512나 Whirlpool 등이 이에 해당한다(송유진, 도정민, 2012: 19).

그런데 최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일부 사업자들은 단순히 암호화만 적용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권고되고 있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이 사용되었는지 까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모 포털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해 1심 판결은 해당 포털사가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 조치를 이행하지는 하였으나 현재 권고되지 않는 MD5 알고리즘을 사용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물론 이 사례는 동일 사건이 다른 지방법원에도 계류 중이므로 아직 최종적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겠으나, 법원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대하여 단순히 법률에 명시된 조치의 형식적 이행만으로는 부족하고, 암호화 알고리즘의 암호 강도와 같이 실질적·구체적 조치까지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사업자나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

## ③ 민원 업무 처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제공 사례

사업자나 공공기관 등에서 고객이 민원이나 일명 클레임을 제기한 경우, 이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관련자들이 이용하거나 협력업체, 민원 제기 대상자 등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sup>19)</sup>에 자주 접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근 상가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했다니 그 상가에서 나의 민원제기 사실을 전달받아 알고 있는 경우, 대형마트에서 제품 하자로 클레임을 제기했는데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갑자기 제품 제조업체가 연락을 해오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례들은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겠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당초 수집한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은 비록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나 공공기관 등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심코 과거의 관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없는지를 철저히 살펴보고,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하거나 또는 명확한 법령상 근거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반 업무절차를 점검해야 한다.

## ④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조치사항 위반 사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관련한 조치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사업자나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안내판 설치와 같은 기본적인 무조치사항은 준수율이 향상된 것으로 체감된다. 다만 최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사례를 보면,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CCTV 안내판 설치 미비를 지적하는 민원이 종종 접수되고 있다. 안내판 설치 의무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자라면 반드시 지켜야할 조치사항이고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므로 잠깐의 무관심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정(법 제25조)은 '공개된 장소'에 CCTV 등이 설치된 경우에 적용되는데 최근에는 비공개 장소(예를 들어 병원의 진료실, 근로모니터링 목적의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증가했다. 이러한 경우는 법 제25조는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근거규정인 법 제15조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병원 진료실 같은 비공개장소는 정보주체(환자 및 보호자 등)의 동의를 받거나,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개인정보처리자의

19)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설치됨. 국번 없이 118이나 홈페이지:  
http://www.118.or.kr

정당한 이익이 명백하게 큰 경우 등에 한해 CCTV를 통한 개인영상정보 수집·이용이 허용된다. 특히, 사무실 내부에 근로모니터링 목적으로 설치되는 CCTV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sup>20)</sup>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노사가 협의하여 그 설치여부를 정하여야 한다고 입법으로 정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내 민간 부문의 정보보호 현황 파악을 위해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정보보호 실태조사'(2013)에 따르면, 기업 부문에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정보보호에 투자한 기업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며 업종별·규모별 정보보호 수준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1)</sup>

일상적인 경제·업무 활동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은 자칫 후순위로 밀려나기 쉬우나, 만에 하나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따르는 손실이 현실적으로 훨씬 크다는 것이 실제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일정부분 시행 초기의 어려움과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우리 사회공동체 모두의 책임과 의무라는 것을 인지하고 법에서 규정한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sup>22)</sup>

## 2. 쟁점사항 보완 및 해결을 위한 대책

### 1)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주요 기관들의 쟁점사항에 대한 대책 강구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 시행에 들어간 이래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에서는 기존에 적용되어 왔던 위의 쟁점사항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는 법제정 이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적인 구제수단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메커니즘을 법제화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보완책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여 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은 유비쿼터스 컴퓨팅으로 인한 정보사회의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는 주요입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법 위반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다.<sup>23)</sup>

20) 법률 제5312호, 제정·시행: 1997.3.13.

21) 정보보호 투자 사업체 비율은 26.1%에 불과, 전체 사업체의 73.3%는 정보보호 투자 전무(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22)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www.kisa.or.kr>

23)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기업들에게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인증제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 (2) 대한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에서는 2013. 5. 24(금) ~ 2013. 6. 14(금)에 걸쳐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협회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 법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법무법인 화우)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협회차원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다루어진 주로 내용은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쟁점사항 등으로 법 적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쟁점사항들에 대해 회원들의 합리적인 대처 방법 등에 관한 토론토 이어졌다.<sup>24)</sup>

## (3)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는 2012. 5. 24(목) 총 8시간에 걸쳐 협의회 강의실(한국거래소 별관 6층)에서 상장법인 및 코스닥법인 등 각 기업의 총무, 기획, 법무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업무 책임자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와 실무쟁점 해설 특별연수'를 실시하였다. 이 특별연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 개념 및 용어 해설을 포함하여 외부 고객정보와 내부 임직원 정보를 구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와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역할 및 주요업무를 하루에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과정을 담고 있다. 이 연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개념 및 용어 해설, 개인정보 담당자의 역할과 주요업무, 개인정보 수집·이용·보유·파기 시 실무쟁점,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한 대응과 분쟁해결 절차, 개인정보 관련 업무 제휴와 아웃소싱, 고객정보 관리 실무쟁점 및 임직원 개인정보 관리 실무 쟁점 등의 내용을 주로 다루었다.<sup>25)</sup>

## 2) 쟁점해결을 위한 대책

## (1) 일반적인 대책

## ① 법률간 정합성 문제

최근 발생한 대규모 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 식별번호 활용여부의 문제로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대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를 금지하면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및 법령의 근거가 있는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제24조). 뿐만 아니라, 원칙적 차원에서 동법은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 체계를 구축하였는지 점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PIMS는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평가하게 된다(<http://www.kisdi.re.kr>).

24) 의료진들 의료행위 도중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를 상담하기 위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category=4&no=732772&section=1>)

25) <http://www.klca.or.kr>

을 규정하고 있다(제3조).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및 '공직선거법' 등에는 주민등록번호 등(i-Pin 등과 같은 고유 식별번호 포함)의 활용을 전제로 인터넷 실명제를 여전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거래기록 보존의 목적에서,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은 청소년 보호의 목적(소위 셋다운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인증 및 보존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과 일정한 모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규제 중첩의 가능성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는 "동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동법과 여타의 법률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4)에 있음을 명확히 함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법과 특별법의 소관부서가 다르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와 안전행정부의 소관이다. 이는 경우에 따라 관련 법률 규정을 집행하는데 규제중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34조에서 개인정보처리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정보 주체에게 관련 사실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문제가 포함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고조사를 수행하게 되지만 통지문제에 대해서는 안전행 정부가 재차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 ③ 주민등록번호관리<sup>26)</sup>

주민등록번호의 대표적인 특징은 각 개인이 하나의 고유한 번호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표준통일식별번호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행정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정보를 용이하게 검색·정리·종합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개인의 정보를 역으로 추적하여 한 개인과 관련된 정보들을 검색, 추적하여 악용할 소지도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다면 해킹과 같은 불법적인 수단이 아니라 언제든지 합법적인 경로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개인정보 10여 가지가 유출이 가

26) 1962년 주민등록법 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된 초기의 주민등록번호는 2부분으로 구분된 6자리 숫자(모두 12자리)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1975.11.부터는 생년월일 성별 및 지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된 13자리 숫자체계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능하며 한편으로는 주민등록번호는 차별근거자료, 예를 들면 내국인, 성별, 지역별 및 profiling에 의한 연대기적 개인정보수집이 가능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전자정부 하에서 가상공간에서 신원을 확인하여 전자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문화적 환경의 제약을 극복해야만 한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민간부문에서의 주민등록번호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며, 주민등록번호를 공공부문도 제한적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한 현 법규정을 더욱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공공기관에서 법령에 근거하지도 않고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를 요구하는 민원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란을 삭제하는 방안도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재고하여야 할 시점이다. 우리 국민들의 정보인권 의식이 신장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번호로 대체하는 대책 마련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장기대책으로는 여러 법률을 정비, 불필요한 등록사항을 철폐하고 비효율적으로 중복되어 있는 등록사항을 통폐합해야 한다.

## (2) 법 시행과정에서의 대책

### ① 법 시행의 실효성 문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긴박성을 고려하여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행 유예기간을 두어 신속한 제도정착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법 시행의 세부사항들을 규정할 시행령 및 시행세칙, 고시 및 지침 등의 확정 및 홍보에 있어, 법 적용대상자들이 사전에 법 시행에 대비할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실제로도 법 시행을 하루 앞둔 9월 29일에 시행령 및 세부지침이 공포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법 시행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고시 제2011-제43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소상공인을 사실상 제외하고(동 고시 제3조),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에는 암호와 계획 수립을 전제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을 유예해 주었다(동 고시 제7조). 그간의 ‘개인정보 보호법’ 추진 상황에 비추어본다면 이러한 조치는 불가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 시행에 대비하기에는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중소기업자들을 고려할 때 일정부분 타당성이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예 및 완화 조치는 당초 입법 목적과는 달리 법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법 시행 이후에도 동법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② 처벌규정의 보완

정보사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주된 쟁점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융합을 하느냐의 문제이다. 사이버범죄 특성상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행하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이나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기관들을 통해 수집한 개인의 신용정보와 금융정보는 신용사기 및 금융사기와 직결되는 심각한 현실이 정보화 시대의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신용정보의 잦은 노출이 수시로 보도되며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부분 상당부분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한국사회는 공공부문보다 취약한 구조를 가진 금융기관 간 금융정보를 공유하는 정보의 누출과 기업이 보관하고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관리 소홀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의 보완이 시급하다. 개인 신용정보가 법률의 미비로 모든 사생활의 금융비밀이 제3자에게 넘어가 사이버범죄에 이용되어 사회적 문제가 된 경우가 빈번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이에 관한 처벌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 IV. 맺는 말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여 올해로 시행 2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법 시행으로 인하여 제조업, 서비스업, 소상공인 등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수범대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과 각종 조치사항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선노력 가운데 전자정부의 구현과 관련하여 볼 때 개인정보보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주체의 입장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나 이용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이를 통제하는 장치가 미흡하다는데 있다(박희영, 2012). 이를 위하여 정보사회 환경에서는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보다 완벽한 후속조치들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학계뿐만 아니라 정부와 개인들 또한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 올바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제가 문제 되는 것은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나 정보주체인 국민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와 법제도의 인식이 상당히 미흡하다는데 있다. 이를 개선하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정립하는 노력과 각종 보호제도의 정비가 필수적 요건을 전제로 하여 정보화정책을 위한 통일된 절차와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침해 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위반 시에는 처벌을 규정하는 법률 보완이 시급하다.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는 제도적 장치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강제조항

만이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유출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전제를 긍정하며, 동시에 인터넷 운영자의 정보접근의 자유에 대한 일종의 제한으로서 작용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한 노력은 법과 제도적·정치적 노력 못지않게 사회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정부 및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같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정보주체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주체인 개인은 개인정보의 유출이 정부와 민간업자들의 내부유출 뿐만 아니라 개인의 허술한 정보관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을 숙지하고 개인 스스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알고 개인정보를 관리·통제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보보호를 위해 마련된 다양한 시스템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같은 법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기결정권의 한 유형으로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 운영자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 시기·방법·범위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정보사회 도래에 따라 컴퓨터를 통해 침해되기 쉬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인터넷을 통한 침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후속연구를 통하여 보완하여야 할 몇 가지 한계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계점 가운데 하나는 컴퓨터를 통한 다양한 지능형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책 내지는 보호 대책에 대한 연구가 지나치게 다양해지고 있고, 따라서 침해사안별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두 번째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복잡다기해져 가고 있는 컴퓨터 범죄 가운데 특히 비재산권분야의 개인정보 침해사례는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체적인 접근과 연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정한 사안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수사 공조체계가 필요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성격을 지녔다는 점에 따른 연구의 한계이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및 인터넷 기술발달의 급진전에 따른 개별 사례연구의 한계를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의 조사분석도 기초적 자료 조사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한계점이다. 한계점으로 정리된 사항에 대한 보완연구는 후속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향후 연구대상과 범위의 확대, 그리고 분석 사례의 일반화를 통한 후속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기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 <참고문헌>

구재균. (2003). 정보화정책-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국가기록원. (2011). 기록인(In). 17.
- 김성언. (20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편).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조사 연구. 성민기업.
- 김정주. (2009). 개인정보보호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환철. (2008). 형사조정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제언. 한국지방행정학회. 한국지방행정학보. 5(2).
- 명승환. (2012). 스마트 전자정부론. 아카데미북. 15-23.
- 박희영. (2012). 3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인터넷 이용을 허용한 인터넷 가입자의 법적 책임. 한국저작권위원회.
- 송유진·도정민. (2012). 속성기반 암호화를 이용한 원격 헬스케어 모니터링 시스템. 한국정보처리학회. 「정보처리학회논문지」. 19-C(1).
- 송은지. (2011). 스마트 진료시스템과 보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 「정보보안논문지」. 12(3).
- 신영진. (2009). 정보화정책·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수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_\_\_\_\_. (2007).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학회. 한국지방행정학보. 4(1)
- 안우현외. (2012). 스마트폰에서 기본블록의 실행추적을 통한 악성앱 탐색기법. 「정보과학회논문지」. 39(3).
- 안전행정부. (2013). 보도자료. 10. 21.
- 이민영. (2004). 정보통신정책·개인정보법제의 개편논의와 개선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 이창범·윤주연. (2003).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편). 각국의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 비교 연구. 일지사.
- 이창범·윤주현. (2004). 해외 개인정보 판례 및 사례 조사 분석. 일지사.
- 이창범·장민영. (2003).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편). 국내외 개인정보 판례 분석-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일지사.
- 임광현. (2003). 행정과 정보관리. 원광사.
- \_\_\_\_\_. (2010). 스마트워크 연구경향분석.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17(4).
- \_\_\_\_\_. (2010). 청년층 고용동향분석 및 고용정보 제공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접근 및 정보활용 분석.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20(4)
- 최원혁. (2011). 컴퓨터 바이러스 진화와 사이버테러. 국가기록원. 「기록인(In)」. 17.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3). 사용자PC의 웹캡(webcap)을 해킹하여 도촬(盜撮)하는 멀웨어등장. 주간기술동향. 제1603호 (2013.7.3.).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009).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동향 조사.
- 한국정보보호센터. (2011) 숭실대학교. 개인정보침해 국내외 판례조사 및 분석. 호정씨앤피.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12). (사)사이버경제사회연구소. 인터넷 개인정보 노출방지 및 프

- 라이버시 보호 방안 연구. R&B기획.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개인정보보호 주간동향(제7호). 2013. 10. 31.
- 행정안전부. (2009).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김대리. 개인정보보호 달인 되기. 호정씨앤피.
- 행정안전부. (2010).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 강달천·김민섭·김현철. (2005). KISA:2005년 개인정보 피해구제 및 상담 사례분석.  
[http://www.kisa.or.kr/kisa/data/jsp/data\\_4010\\_view.jsp?@no=011012  
 &page=1&keyField=1&keyWord=&g\\_id=&s8fid=1115509795617](http://www.kisa.or.kr/kisa/data/jsp/data_4010_view.jsp?@no=011012&page=1&keyField=1&keyWord=&g_id=&s8fid=1115509795617)
- 김상광. (2010). 행정안전부. 보안뉴스 인터넷 기사. 2010. 11. 17.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23585&kind=1>
- 김태형. 보안뉴스 인터넷 기사 2010. 11. 19.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23622&kind=1>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서비스.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2010, 2012.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22581&kind=1>. 2011,  
 2013.
-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개인정보:  
[http://www.boho.or.kr/private/priv\\_01.jsp?page\\_id=1](http://www.boho.or.kr/private/priv_01.jsp?page_id=1)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란 개인정보침해유형  
[http://privacy.kisa.or.kr/privacy/jsp/privacy\\_5010.jsp](http://privacy.kisa.or.kr/privacy/jsp/privacy_5010.jsp) 2010, 2013.
-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백서(요약본). 2010, 2013.
- 행정안전부 공공I-PIN. [http://www.g-pin.go.kr/center/pic/sub\\_01.gpin](http://www.g-pin.go.kr/center/pic/sub_01.gpin) 2013.
-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공편).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사례집. 2009,  
 2013.  
[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  
 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12037&searchCat=&userBtBea  
 n.categoryCd=&userBtBean.ctxCd=1002&userBtBean.ctxType=21010  
 006&searchKey=1&searchVal=똥Page=1](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12037&searchCat=&userBtBean.categoryCd=&userBtBean.ctxCd=1002&userBtBean.ctxType=21010006&searchKey=1&searchVal=똥Page=1)
- UN. (2012). United Nations E\_Government Survey 2012.  
[http://www2.unpan.org/egovkb/global\\_reports/..](http://www2.unpan.org/egovkb/global_reports/)

접수일(2013년 11월 15일)

수정일자(2013년 12월 6일)

게재확정일(2013년 12월 13일)